

BEAT360 대관 규약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약은 기아자동차 BEAT360 장소 대관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장 운영 통칙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1. “대관”이라 함은 대관인이 행사 주최 등을 위해 BEAT360 의 장소 등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2. “대관인”이라 함은 제 3 장의 대관 절차를 통해 기아자동차에 BEAT360 의 대관을 신청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.

제 3 조 (대관의 조건)

1. 대관인은 본 대관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BEAT360 내에서 대관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대관인에게 있습니다.
3. 대관인은 BEAT360 내에서 식음료 및 기타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4. 대관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식음료 제공이 필요할 경우 BEAT360 에 입점한 식음료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대관인이 외부음식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기아자동차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외부 음식 반입이 부적절하다고 기아자동차가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음식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(대관시간)

1. BEAT360 의 대관 가능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9 시까지로 합니다. 단, 이는 기아자동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제 1 항 시간 외 추가시간 필요 시 대관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제 3 장 대관 절차

제 5 조 (대관의 범위)

대관의 범위는 대관인이 BEAT360 내 대관 승인을 받은 장소이며, 대관인은 별도 승인 없이 대관 범위 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6 조 (대관 신청)

BEAT360 대관 신청인(이하 "신청인")은 BEAT360 홈페이지(beat360.kia.com) 안내 절차에 따라 기아자동차에 대관 신청을 하며, 대관 신청 승인 심사를 위해 기아자동차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(대관 승인)

1. 기아자동차는 대관 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대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.
2. 기아자동차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(양도금지)

1. 대관인은 대관 승인에 따른 지위 및 권리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대관인이 제 1 항을 위반하는 경우, 대관인에 대한 대관 승인은 취소되는 것으로 합니다.

4장 부대시설 및 장비

제 9 조 (부대시설 및 장비)

1. 대관인은 BEAT360 내 사무실, 제어실, 대기실,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및 의자, 포디움, 마이크 등의 대여물품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대시설 및 대여물품의 보유 현황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2. 대관인은 부대시설 및 대여물품 사용시 기아자동차의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대관인, 대관인의 임직원, 대관인이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대시설 또는 대여물품 훼손 시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 5장 홍보물 및 방송

제 10 조 (홍보물 협의)

1. 대관인은 홍보물 제작 시 기아자동차의 CI 규정 및 BEAT360 BI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아자동차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.
2. 대관인이 홍보물 등을 BEAT360 시설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아자동차가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(촬영 협의)

대관인이 BEAT360 시설 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기아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
제 6 장 운영관리

제 12 조 (운영관리)

1. 대관인은 BEAT360 내 대관인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시설파손, 화재, 물품 도난 등과 관련한 보험가입 책임은 대관인에게 있습니다.
2. 대관인은 대관기간 중 화재, 도난 등 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행사 운영 인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3. 대관인은 BEAT360 시설 및 BEAT360 내 비치된 물품 등이 훼손,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대관인, 대관인의 임직원, 행사, 그 밖의 행사 업무 수행인원에 의해 훼손,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4. 대관인은 대관인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인의 임직원, 행사 참가자, 그 밖의 행사 업무 수행인원, 제 3 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 13 조 (원상복구)

1. 대관인은 대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대관장소 및 기타 대여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합니다.
2. 대관인이 원상복구를 지체하는 경우, 기아자동차는 직접 또는 대관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원상복구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관인은 기아자동차가 지출한 비용 일체를 기아자동차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 대관인이 원상복구를 지체하여 기아자동차에게 제 2 항의 비용 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대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.

제 14 조 (폐기물처리)

1. 대관인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2. 제 1 항의 의무가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대관인이 부담합니다.

제 7 장 용어해석 및 분쟁

제 15 조 (용어해석)

본 대관규약 및 계약서 내용 중 용어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의 해석을 따릅니다.

제 16 조 (불가항력 및 면책)

천재지변, 재앙, 전쟁,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기아자동차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대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, 기아자동차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17 조 (분쟁의 해결)

BEAT360 대관과 관련하여 대관인/대관신청인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